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. 10. 22 선고 2024가단4287 판결 [건물명도등]

## 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10. 22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  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호 23.14㎡를 인도하고,  
나. 2024. 1. 1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5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이기홍

별지